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3-0111071  
(43) 공개일자 2013년10월10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Q 30/02 (2012.01)

(21) 출원번호 10-2012-0033571

(22) 출원일자 2012년03월30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1) 출원인

(주)디지털오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23, 옹정빌3층 (역삼동)

(72) 발명자

김영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태영아파트 934동 902호

(74) 대리인

김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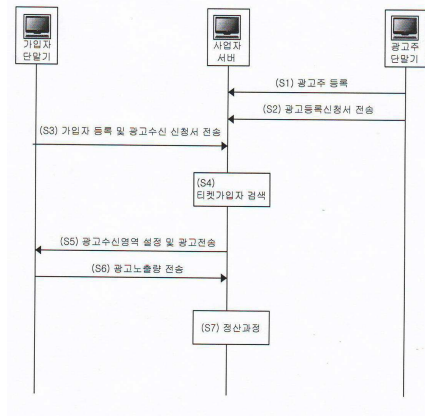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54) 발명의 명칭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사, 제조사 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의 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수주된 광고를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전에 수신에 동의한 타겟가입자에게만 전송함으로써, 광고주는 타겟가입자만을 상대로 효과적인 광고를 진행할 수 있고, 통신사 등의 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얻은 광고수익을 가입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및 가입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으며, 가입자는 단순히 광고만을 수신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 광고주 및 가입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 도1**



## 특허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사업자서버가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광고주단말기로부터 광고주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타켓가입자, 업종을 포함하는 광고주의 기본데이터를 전송받아서 광고주로 등록시키고, 상기 광고주의 기본데이터를 광고주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키는 제1단계;

광고주단말기가 광고내용, 광고를 진행하는 매체, 타켓가입자, 광고시간을 포함하는 광고의 내용, 대상 및 진행방법이 명시된 광고등록신청서를 사업자서버로 전송하는 제2단계;

사업자서버가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를 수신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가입자단말기로부터 가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심분야, 업종을 포함하는 가입자의 기본데이터를 전송받아서 가입자로 등록시키고, 상기 전송받은 가입자의 기본데이터를 가입자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또한 가입자단말기에서 전송하는 광고의 종류, 시간, 가입자단말기에서 광고수신에 할당할 부분을 포함하는 광고수신신청서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제3단계;

사업자서버는 광고주단말기가 전송한 광고등록신청서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광고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광고주단말기가 요청한 타켓가입자를 가입자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색출하는 제4단계;

사업자서버는 상기 색출된 타켓가입자에게 상기 광고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광고 내용을 전송하는 제5단계;

가입자단말기는 사업자서버로부터 전송된 광고의 노출여부 및 실제 광고노출량을 체크하여 이를 사업자서버에 전송하는 제6단계;

사업자서버는 가입자단말기로부터 수신된 광고의 노출여부 및 실제 광고노출량을 수수료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일정기간동안 합산하여 정산하는 제7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에서,

가입자가 신규가입자로서 가입자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는,

광고를 수신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심분야, 업종을 포함하는 가입자의 기본데이터와 가입자가 선택한 요금체계를 포함하는 가입자의 광고수신신청서를 접수한 대리점단말기는 가입자에게 제공된 신규 단말기에 대한 단말기정보와 상기 광고수신신청서를 사업자서버에 전송하는 제2-1단계;

사업자서버는 상기 광고수신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새로운 가입자단말기에 광고의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프로그램과 광고사용량을 카운터할 수 있는 카운터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제2-2단계;

상기 가입자단말기는 사업자서버가 전송한 상기 인증프로그램과 카운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업자서버에 접속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사업자서버에게 전송하는 제2-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

###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에서,

가입자가 사업자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존가입자 또는 타사업자 회원으로서 가입자단말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단말기가 앱 또는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광고의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프로그램과 광고사용량을 카운터할 수 있는 카운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상작동여부를 전송하는 제2-6단계;

가입자단말기가 가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심분야, 업종을 포함하는 가입자의 기

본데이터와 가입자가 선택한 요금체계를 포함하는 가입자의 광고수신신청서를 사업자서버에 전송하는 제2-7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있어서, 상기 요금체계는 사업자서버에 광고내용을 일임하는 기본형과 광고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

**청구항 5**

가입자가 조작하는 가입자단말기;

광고주가 조작하는 광고주단말기; 및

상기 가입자단말기와 광고주단말기를 연결하며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자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사업자서버는 데이터처리부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처리부는

가입자단말기에서 전송되는 가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심분야, 업종을 포함하는 가입자의 기본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가입자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역할을 가입자등록부;

가입자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광고의 종류, 시간, 가입자단말기에서 광고수신에 할당할 부분등의 광고수신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수신신청서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광고수신신청서등록부;

타켓가입자단말기로 광고수신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광고를 전송하고, 가입자단말기에서 광고를 제대로 수신하였는지를 여부에 대한 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수수료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광고전송부;

광고등록데이터베이스에서 광고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광고주단말기의 요청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가입수신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광고주단말기가 요청하는 최적의 타켓가입자를 색출하는 타켓가입자색출부;

광고주등록부로부터 전송되는 광고주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타켓가입자, 업종을 포함하는 기본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주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광고주등록부;

광고주단말기가 전송하는 광고내용, 광고를 진행하는 매체, 타켓가입자, 광고시간을 포함하는 광고의 내용, 대상 및 진행방법이 명시된 광고등록신청서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등록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광고등록신청서등록부;

수수료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가입자단말기의 광고수신데이터량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가입자단말기에 지급할 수수료 및 광고주단말기에 청구할 수수료를 산정하는 정산부;

가입자단말기가 위치기반정보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 실시간으로 가입자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를 가입자데이터베이스 및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위치확인부; 및

상기된 구성요소들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광고주데이터베이스, 가입자데이터베이스,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 광고등록데이터베이스, 수수료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서비스 제공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사, 제조사 또는 앱개발사 등의 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수주된 광고를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전에 수신에 동의한 타켓가입자에게만 전송함으로써, 광고주는 타켓가입자만을 상대로 효과적인 광고를 진행할 수 있고, 통신사 등의 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얻은 광고수익을 가입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및 가입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으며, 가입자는 단순히 광고만을 수신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 광고주 및 가

업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 배경 기술

- [0002] 전 세계적으로 유·무선 정보통신망의 빠른 보급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시장을 통해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향유하는 문화가 급속하게 정착하고 있다.
- [0003] 이에 따라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 서비스의 제공 형태도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 [0004] 우선적으로 종래에 온라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광고의 형태를 살펴보면 수많은 포탈업체 및 온라인 업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검색, 쇼핑, 예매, 뉴스, 방송, 학습, 게임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 혹은 일부는 유료로 제공하고 해당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 수와 1일 방문자의 숫자(1일 페이지 뷰)를 기반으로 광고금액을 산정(CPM/노출광고)하거나 광고주가 등록된 광고를 가입자들이 클릭 시 과금하는 방식(CPC/클릭광고)과 해당광고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용에 따라 과금하는 CPA광고 및 검색광고방식 등의 다양한 광고기법을 통해 광고주를 유치하며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 [0005] 이에 따라 동일한 크기의 배너, 혹은 동영상 등의 판매수입에 있어 회원 수가 많거나 방문자수(페이지 뷰)가 가장 많은 업체가 최고의 광고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2위, 3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결정적 잣대 역시 1일, 1주 또는 1달간의 페이지 뷰와 회원 수에 의하여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광고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 [0006] 이러한 방식과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과열경쟁과 한정된 시장구조 등으로 인해 포화상태가 된 온라인시장과 검증되지 않는 광고업체의 등장과 난립이 기업들의 광고 집행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용대비 도달율과 효과가 떨어지는 광고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 [0007] 또한 온라인 업체들이 제공하는 광고의 실행방식이 모두가 비슷한 형태의 광고방법으로 역시 광고주가 자신들의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타겟팅광고를 실행 할 수 없거나, 광고 집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광고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광고방법도 광고금액과 연령, 성별, 지역, 시간, 금액 등을 특정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 [0008] 또한 가입자들이 온라인 업체들이 제공하는 특정콘텐츠와 검색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이용과 관련이 없는 광고들이 팝업광고나 배너 및 동영상광고 등으로 도출되어 반강제적으로 시청하여야 하는 일방통행식 광고를 실행시킴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광고에 대한 불쾌함과 거부감을 자극시켜 광고에 대한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었다.
- [0009] 이와 같이 광고주와 가입자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기존의 광고방식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광고주와 가입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 형태의 광고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발명의 내용

#### 해결하려는 과제

- [0010] 본 발명은 상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수주된 광고를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전에 수신에 동의한 타겟가입자에게만 전송함으로써, 광고주는 타겟가입자만을 상대로 효과적인 광고를 진행할 수 있고, 통신사 등의 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얻은 광고수익을 가입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기업의 사회기여 및 가입자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가입자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광고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과제의 해결 수단

- [0011]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은
- [0012] 사업자서버가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광고주단말기로부터 광고주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타겟가입자, 업종을 포함하는 광고주의 기본데이터를 전송받아서 광고주로 등록시키고, 상기 광고주의 기본데이터를 광고주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키는 제1단계;
- [0013] 광고주단말기가 광고내용, 광고를 진행하는 매체, 타겟가입자, 광고시간을 포함하는 광고의 내용, 대상 및 진행방법이 명시된 광고등록신청서를 사업자서버로 전송하는 제2단계;

- [0014] 사업자서버가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를 수신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가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심분야, 업종을 포함하는 가입자의 기본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가입자로 등록시키고, 상기 전송받은 가입자의 기본데이터를 가입자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 [0015] 또한 가입자단말기에서 전송하는 광고의 종류, 시간, 가입자단말기에서 광고수신에 할당할 부분을 포함하는 광고수신신청서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제3단계;
- [0016] 사업자서버는 광고주단말기가 전송한 광고등록신청서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광고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광고주단말기가 요청한 타겟가입자를 가입자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색출하는 제4단계;
- [0017] 사업자서버는 상기 색출된 타겟가입자에게 상기 광고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광고 내용을 전송하는 제5단계;
- [0018] 가입자단말기는 사업자서버로부터 전송된 광고의 노출여부 및 실제 광고노출량을 체크하여 이를 사업자서버에 전송하는 제6단계;
- [0019] 사업자서버는 가입자단말기로부터 수신된 광고의 노출여부 및 실제 광고노출량을 수수료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일정기간동안 합산하여 정산하는 제7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020]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시스템은
- [0021] 가입자가 조작하는 가입자단말기;
- [0022] 광고주가 조작하는 광고주단말기; 및
- [0023] 상기 가입자단말기와 광고주단말기를 연결하며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자서버를 포함하며,
- [0024] 상기 사업자서버는 데이터처리부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며,
- [0025] 상기 데이터처리부는
- [0026] 가입자단말기에서 전송되는 가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심분야, 업종을 포함하는 가입자의 기본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가입자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역할을 가입자등록부;
- [0027] 가입자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광고의 종류, 시간, 가입자단말기에서 광고수신에 할당할 부분등의 광고수신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수신신청서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광고수신신청서등록부;
- [0028] 타겟가입자단말기로 광고수신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광고를 전송하고, 가입자단말기에서 광고를 제대로 수신하였는지를 여부에 대한 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수수료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광고전송부;
- [0029] 광고등록데이터베이스에서 광고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광고주단말기의 요청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가입수신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광고주단말기가 요청하는 최적의 타겟가입자를 색출하는 타겟가입자색출부;
- [0030] 광고주등록부로부터 전송되는 광고주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타겟가입자, 업종을 포함하는 기본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주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광고주등록부;
- [0031] 광고주단말기가 전송하는 광고내용, 광고를 진행하는 매체, 타겟가입자, 광고시간을 포함하는 광고의 내용, 대상 및 진행방법이 명시된 광고등록신청서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등록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광고등록신청서등록부;
- [0032] 수수료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가입자단말기의 광고수신데이터량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가입자단말기에 지급할 수수료 및 광고주단말기에 청구할 수수를 산정하는 정산부;
- [0033] 가입자단말기가 위치기반정보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 실시간으로 가입자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를 가입자데이터베이스 및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위치확인부; 및
- [0034] 상기된 구성요소들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 [0035]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광고주데이터베이스, 가입자데이터베이스,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 광고등록데이터베이스, 수수료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 [0036]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의 제공방법은 광고주는 타겟가입자만을 상대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서 광고 효과가 매우 높으며, 통신사 등의 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얻은 광고수익을 가입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 가능하고 또한 가입자들의 비용부담 감소로 인하여 가입이 손쉬워져서 가입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 [0037] 또한 가입자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가입자단말기의 일부를 단순히 광고주의 광고를 수신하는 용도로 할당하고 광고주의 광고를 수신하는 행위만을 하여도 통신비용등의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0038] 특히, 위치기반정보 또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가입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검색하여, 그에 가장 적합한 광고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집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 [0039] 가입자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거나 관심이 있는 광고만을 수신할 수 있어서 종래와 같은 쓰레기 광고를 접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 [0040] 또한 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광고수신환경을 조절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으며, 사용자는 광고가 제대로 가입자단말기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광고가 가입자단말기로 전송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므로, 광고에 대한 비용체계가 매우 합리적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0041]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의 흐름도,
- 도 2는 신규가입자인 경우의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의 흐름도,
- 도 3은 가입자가 가입자단말기를 소유한 경우의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의 흐름도,
-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0042]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는 실시예를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 [0043] 본 명세서에서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따라서, 몇몇 실시예에서, 잘 알려진 구성 요소, 잘 알려진 동작 및 잘 알려진 기술들은 본 발명이 모호하게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0044] 또한,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그리고,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언급된) 용어들은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도 포함한다. 또한, '포함(또는, 구비)한다'로 언급된 구성 요소 및 동작은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 및 동작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 [0045] 다른 정의가 없다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기술 및 과학적 용어를 포함)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 이상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 [0046]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0047]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의 흐름도이다.
- [0048] 제 1단계(S 1)는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자신이 조작할 수 있는 광고주단말기(300)를 이용하여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자서버(100)에 접속한다.
- [0049] 본 발명에서의 사업자서버(100)라 함은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버로서, 사업자의 예시로서는 KT와 같은 통신사, 삼성과 같은 제조사 및 애플사등을 들 수 있다.

- [0050] 또한 본 발명에서의 단말기라 함은 핸드폰,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등 그 형태와 무관하게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자서버(100)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0051] 광고주는 사업자서버(100)에 접속해서 사업자서버(100)가 요청하는 대로 광고주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타켓가입자, 업종을 포함하는 기본데이터를 작성하여 이를 광고주단말기(300)를 통해서 사업자서버(100)로 전송한다.
- [0052] 사업자서버(100)는 광고주단말기(300)가 전송한 기본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자신의 서버에 등록시키고, 광고주단말기(300)가 전송한 기본데이터를 광고주데이터베이스로서 저장한다.
- [0053] 제2단계(S 2)는 광고주가 광고주단말기(300)를 이용하여 광고내용, 광고를 진행하는 매체, 타겟가입자, 광고시간을 포함하는 광고의 내용, 대상 및 진행방법이 명시된 광고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업자서버(100)로 전송한다.
- [0054]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광고주단말기(300)가 사업자서버(100)로 전송하는 광고등록신청서에는 광고를 진행할 지역, 시간대, 대상가입자의 연령, 가입자단말기(200)에서 노출시킬 부분등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서버(100)는 수신된 광고등록신청서를 광고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 [0055] 여기서 광고를 진행할 시간은 실제 가입자단말기(200)에 광고가 노출될 시간으로서, 동일한 광고비용에 대하여 노출이 많은 시간대에는 노출시간을 줄이고, 노출이 적은 시간대에는 노출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다. 예를들어 동일한 10만원의 광고비용에 대하여, 밤 00:01~8:00, 8:01~10:00, 10:01~13:00, 13:01~15:00, 15:01~18:00, 18:00~24:00의 각 시간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 [0056] 제3단계(S 3)는 가입자가 자신이 조작할 수 있는 가입자단말기(200)를 이용하여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자서버(100)에 접속한다. 가입자는 사업자서버(100)에 접속한 상태에서 사업자서버(100)가 요구하는 가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심분야, 업종을 포함하는 가입자의 기본데이터를 작성하여서 이를 사업자서버(100)로 전송한다. 사업자서버(100)는 가입자단말기(200)가 전송한 기본데이터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가입자단말기(200)가 전송한 기본데이터를 가입자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 [0057] 다음으로 가입자단말기(200)는 자신이 수신하고자 하는 광고의 종류, 시간, 가입자단말기(200)에서 광고수신에 할당할 부분등의 광고수신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수신신청서를 사업자서버(100)로 전송한다. 사업자서버(100)는 가입자단말기(200)가 전송한 광고수신신청서를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123)에 저장한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단말기(200)는 광고수신신청서를 사업자서버(100)에 제출함으로써 가입자단말기(200)에서 광고수신신청서에 기재된 부분을 본 발명에 의한 광고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0058] 여기서, 가입자단말기(200)에서 광고 수신에 할당할 부분은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자단말기(200)에서 차지하는 크기 및 위치가 정해지고, 또한 선택된 시간대에만 광고수신에 할당되도록 할 수도 있다.
- [0059] 또한 가입자단말기(200)는 사업자서버(100)에 접속해서 기설정된 설정치를 변경함으로써 광고수신에 할당되는 부분의 크기, 위치 및 시간대 등을 가입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통신환경이 중요한 경우에는 광고수신을 거부하거나 작게 수신하고, 통신환경보다는 광고수신에 따른 수익창출이 중요한 경우에는 가입자단말기(200)의 많은 부분을 광고수신에 할애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 [0060] 종래의 광고는 광고대행주체(네이버, 다음)에서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광고를 함께 보내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보면서 무차별적으로 다양한 광고를 접하는 방식이지만, 본 발명은 PC, 스마트폰, 태블릿PC등의 가입자단말기(200)의 화면에서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범위를 할당하여 지속적으로 광고를 수신할 수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가입자의 승인에 의해 가입자단말기(200)의 광고 영역, 시간 및 위치를 더 넓게 적용시킬 수 있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볼 경우 더 많은 혜택이 가입자에게 부여된다.
- [0061] 제4단계(S 4)에서 사업자서버(100)는 광고등록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광고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광고주단말기(300)가 요청한 광고내용을 수신할 타켓가입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가입자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

- [0062] 즉, 사업자서버(100)는 광고주가 선정한 기준에 적합한 타겟가입자가 될 수 있는 가입자를 색출한다. 여기서의 기준은 가입자의 지역, 광고수신동의 시간, 연령, 가입자단말기(200)에서 광고수신에 할당된 부분, 관심분야등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자서버(100)는 가입자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적합한 타겟가입자를 검색한다.
- [0063] 사업자서버(100)는 상기된 기준에 의해 타겟가입자를 검색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 [0064] 가입자의 지역은 위치기반정보 또는 접속시 사용된 IP 주소에 의해 정해지거나, 제3단계에서 가입자단말기(200)기 전송한 기본데이터에 기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0065] 가입자의 연령은 제3단계에서 가입자단말기(200)기 전송한 기본데이터에 기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핸드폰, 앱, 태블릿PC의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단말기(200)의 가입시 사용된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 [0066] 노출시간은 제3단계에서 가입자단말기(200)가 전송한 기본데이터에 기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색한다.
- [0067] 사업자서버(100)는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제3단계에서 가입자단말기(200)가 전송한 기본데이터에 기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색하여, 광고주단말기(300)가 요청한 최적의 타겟가입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한다.
- [0068] 제5단계(S 5)는 사업자서버(100)가 제4단계에서 색출된 타겟가입자에게 광고를 직접 전송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자서버(100)는 타겟가입자의 가입자단말기(200)가 제3단계의 광고수신신청서에 기재한 가입자단말기(200)에서 광고수신에 할당된 부분을 가입자단말기(200)에서 할당하고, 상기 할당받은 가입자단말기(200)의 특정부분으로 광고를 전송하게 된다.
- [0069] 이 과정에서 가입자단말기(200)는 사업자서버(100)에 접속하여 제3단계에서 사업자서버(100)로 전송한 광고수신신청서에 기재된 수신하고자 하는 광고의 종류, 시간, 가입자단말기(200)에서 광고수신에 할당할 부분등의 광고수신에 필요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변경사항이 가입자단말기(200)로부터 사업자서버(100)로 전송이 된 경우에는 사업자서버(100)는 변경된 내용에 의해 타겟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의해 광고전송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단말기(200)는 변경된 내용에 의해 정산을 받게 된다.
- [0070] 제6단계(S 6)에서는 사업자서버(100)는 가입자단말기(200)로부터 수신된 광고의 노출여부 및 실제 광고노출량을 수신하고,
- [0071] 제7단계(S 7)에서 사업자서버(100)는 가입자단말기(200)로부터 수신된 광고의 노출여부 및 실제 광고노출량을 수주료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일정기간동안 합산하여 정산한다.
- [0072] 일정기간동안의 광고노출량을 합산하여, 이를 포인트, 현금등으로 환산한다. 환산된 포인트 또는 현금에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한 차감용으로 사용되거나, 직접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불된다.
- [0073] 한편, 제3단계(S 3)에서의 가입자등록은 2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다.
- [0074] 먼저 가입자가 가입자단말기(200) 자체도 없는 신규가입자인 경우와 가입자가 기존 사업자의 회원이거나 또는 타사업자의 회원으로서 가입자단말기(200)는 있으나 사업자서버(100)에 가입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눌수 있다.
- [0075] 도 2는 신규가입자인 경우의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의 흐름도이다. 제3단계를 제외한 단계는 상기된 설명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0076] 가입자는 가입자단말기(200)도 없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 가입자는 사업자의 대리점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가입자로서 등록하여야 한다.
- [0077] 이를 위하여 제3-1단계(S 3-1)에서는 가입자는 대리점을 방문해서 사업자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가입자단말기(200)를 구매하면서 동시에 광고수신신청서를 작성한다.
- [0078] 대리점단말기는 가입자가 작성한 광고수신신청서와 가입자단말기(200)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서버(100)에 전송하고, 사업자서버(100)는 이를 가입자데이터베이스(122)에 저장한다.
- [0079] 제3-2단계(S 3-2)에서 광고수신신청서와 가입자단말기(200)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은 사업자서버(100)는 가입자단말기(200)로 새로운 가입자단말기(200)에 광고의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프로그램과 광고사용량을 카운터할 수 있는 카운터프로그램을 전송한다.
- [0080] 제3-3단계(S 3-3)에서는 가입자단말기(200)는 전송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그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이

를 사업자서버(100)에 전송한다.

- [0081] 여기서, 새로운 가입자단말기(200)의 경우에는 제3-2단계와 제3-3단계가 사업자에 의해 직접 시행될 수도 있고, 해당 가입자단말기(200)의 생산과정에서 제조사나 통신사에 의해 진행될 수도 있다.
- [0082] 도 3은 가입자가 가입자단말기(200)를 소유한 경우의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의 흐름도이다. 이는 가입자가 기존의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단지 광고수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의 회원인 경우이다. 제3단계를 제외한 단계는 상기된 설명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0083] 제3-6단계(S 3-6)에서는 가입자단말기(200)가 앱 또는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광고의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프로그램과 광고사용량을 카운터할 수 있는 카운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상작동여부를 사업자서버(100)에 전송한다.
- [0084] 제3-7단계(S 3-7)에서는 가입자단말기(200)가 가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심분야, 업종을 포함하는 가입자의 기본데이터와 가입자가 선택한 요금체계를 포함하는 가입자의 광고수신신청서를 사업자서버(100)에 전송하는 단계이다.
- [0085] 한편 사용자단말기에는 유사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로 설치될 수도 있다.
- [0086] 한편 가입자가 선택하는 요금체계는 크게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은 일정한 약정기간동안에 사업자서버(100)에 광고내용을 일임하는 형태로서, 이는 주로 신규 가입자 유치시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신규 가입자단말기(200) 구매비용자체를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거나 또는 매월 포인트 또는 현금등을 지급할 수도 있다.
- [0087] 선택형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동영상, 이미지 광고등을 수신하게 되는 것으로서, 스마트폰의 전체 화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그 비용이 산정될 수도 있고, 또한 광고가 나오는 바탕화면, 전화기, 앱 등의 선택된 위치에 따라서도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 [0088] 또한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은 GPS를 이용하여 수신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가장 장소에 있는 가입자단말기(200)에 광고를 전송할 수 있고, 또한 가입자데이터베이스(122)에 저장된 가입자의 주소, 관심사항,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광고주가 가장 원하는 계층에 직접적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서, 광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 [0089] 특히,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은 본사와 다수의 대리점 또는 영업점으로 구성된 가전, 식품 등의 프랜차이즈 업체에 최적의 광고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광고를 할 경우에 본사만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와 함께 가입자단말기(200)의 위치기반정보에 근거하여 가장 인근의 대리점 또는 영업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서, 가입자들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대리점 또는 영업점과 같은 소상공인들도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사의 입장에서는 대리점 또는 영업점과 광고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090] 다음으로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의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의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 [0091]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광고 서비스 제공방법은 가입자단말기(200), 사업자서버(100) 및 광고주단말기(300)를 포함한다.
- [0092] 가입자단말기(200)는 가입자가 조작할 수 있는 단말기이고, 광고주단말기(300)는 광고주가 조작할 수 있는 단말기로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 [0093] 사업자서버(100)는 데이터처리부(110)와 데이터베이스(120)를 포함한다. 데이터처리부는 가입자등록부(111), 광고수신신청서등록부(112), 광고전송부(113), 타겟가입자색출부(114), 광고자등록부(118), 광고등록신청서등록부(117), 정산부(116), 위치확인부(115) 및 제어부(119)를 포함한다.
- [0094] 가입자등록부(111)는 가입자단말기(200)에서 전송되는 가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심분야, 업종을 포함하는 가입자의 기본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가입자데이터베이스(122)에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아울러 가입자단말기(200)가 사업자서버(100)에 접속할 경우에 가입자데이터베이스(122)로부터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불러내어 가입자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0095] 광고수신신청서등록부(112)는 가입자단말기(200)로부터 수신되는 광고의 종류, 시간, 가입자단말기(200)에서 광고수신에 할당할 부분등의 광고수신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수신신청서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123)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 [0096] 광고전송부(113)는 타겟가입자색출부(114)에서 검색된 타겟가입자단말기(200)로 광고수신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광고를 전송하고, 가입자단말기(200)에서 광고를 제대로 수신하였는지를 여부에 대한 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수수료데이터베이스(125)에 기록한다.
- [0097] 타겟가입자색출부(114)는 광고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광고주단말기(300)가 요청하는 광고의 대상을 색출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광고등록데이터베이스(124)에서 광고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광고주단말기(300)의 요청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123)를 검색하여, 광고주단말기(300)가 요청하는 최적의 타겟가입자를 색출하는 역할을 한다.
- [0098] 광고주등록부(118)는 광고주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광고주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타겟가입자, 업종을 포함하는 기본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주데이터베이스(121)에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 [0099] 광고등록신청서등록부(117)는 광고주단말기(300)가 전송하는 광고내용, 광고를 진행하는 매체, 타겟가입자, 광고시간을 포함하는 광고의 내용, 대상 및 진행방법이 명시된 광고등록신청서를 수신하여 이를 광고등록데이터베이스(124)에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 [0100] 정산부(116)는 수수료데이터베이스(125)에 기록된 가입자단말기(200)의 광고수신데이터량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가입자단말기(200)에 지급할 수수료 및 광고주단말기(300)에 청구할 수수료를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
- [0101] 위치확인부(115)는 가입자단말기(200)가 위치기반정보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 실시간으로 가입자단말기(200)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를 가입자데이터베이스 및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123)에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 [0102] 제어부(119)는 상기된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 [0103] 데이터베이스(120)는 광고주데이터베이스(121), 가입자데이터베이스(122),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123), 광고등록데이터베이스(124), 수수료데이터베이스(125)를 포함한다.
- [0104] 광고주데이터베이스(121)는 광고주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타겟가입자, 업종을 포함하는 기본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 [0105] 가입자데이터베이스(122)는 가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심분야, 업종을 포함하는 가입자의 기본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 [0106] 광고수신데이터베이스(123)는 가입자단말기(200)가 전송한 광고의 종류, 시간, 가입자단말기(200)에서 광고수신에 할당할 부분등의 광고수신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수신신청서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 [0107] 광고등록데이터베이스(124)는 광고주단말기(300)가 전송하는 광고내용, 광고를 진행하는 매체, 타겟가입자, 광고시간을 포함하는 광고의 내용, 대상 및 진행방법이 명시된 광고등록신청서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 [0108] 수수료데이터베이스(125)는 수수료산정에 필요한 가입자단말기(200)의 광고수신여부 및 수신된 광고량등의 정산에 필요한 정보들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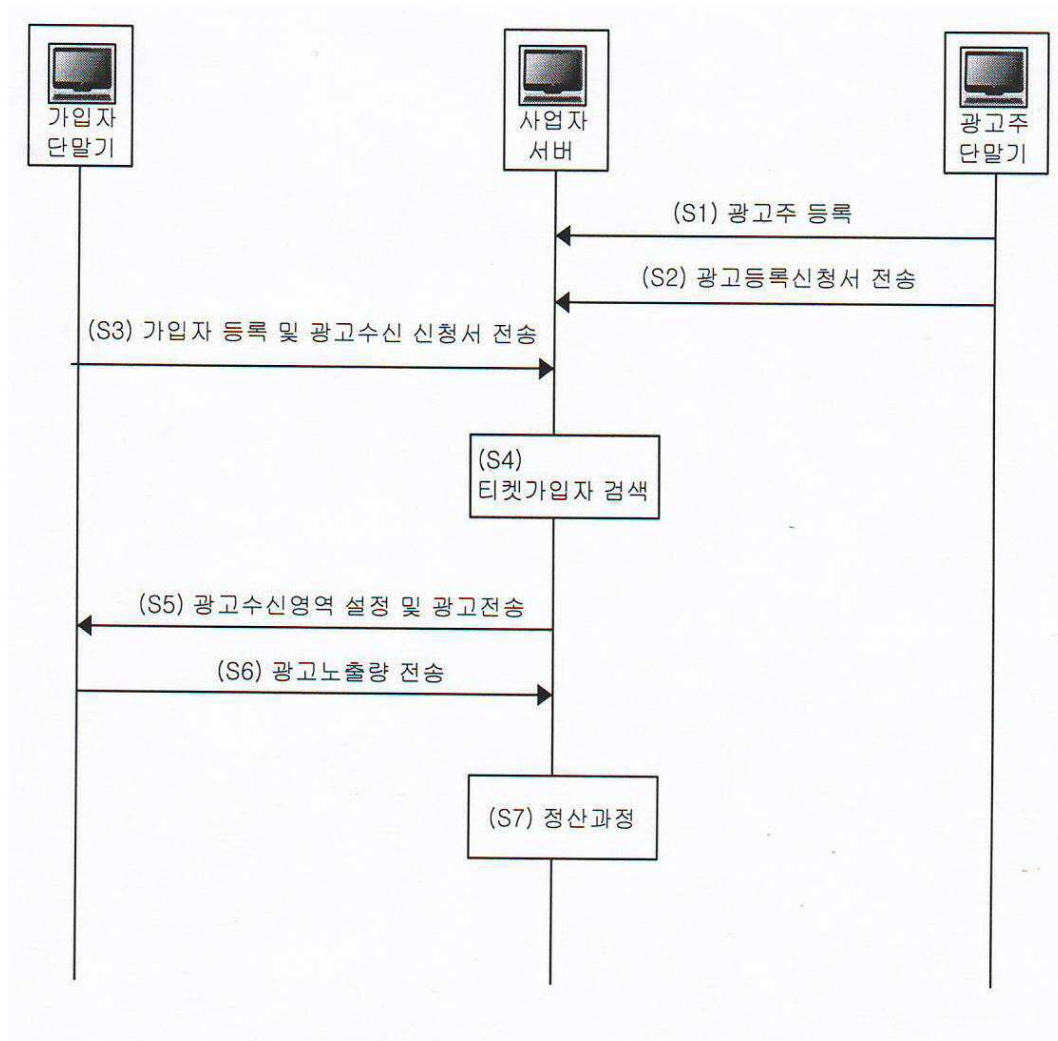
- [0109] 100:사업자서버

200: 가입자 단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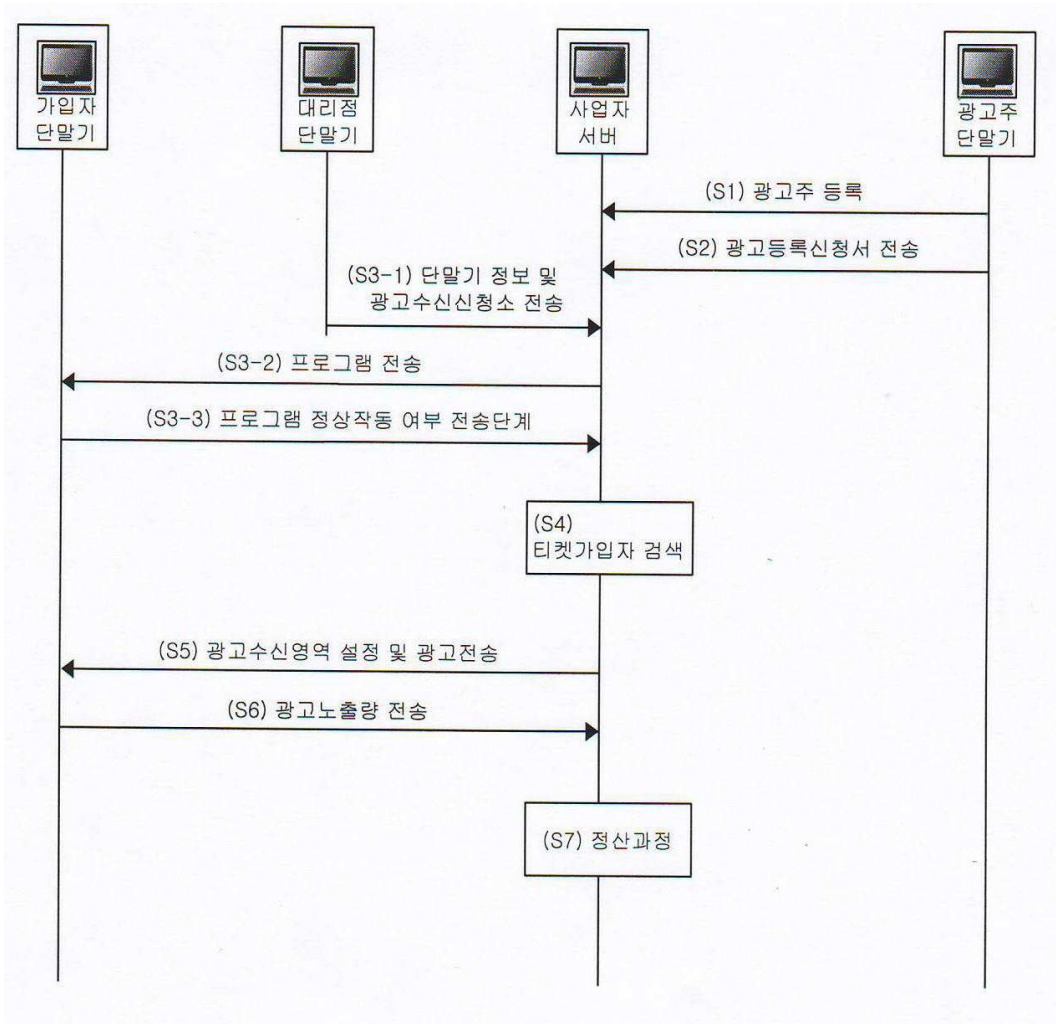
300: 광고주 단말기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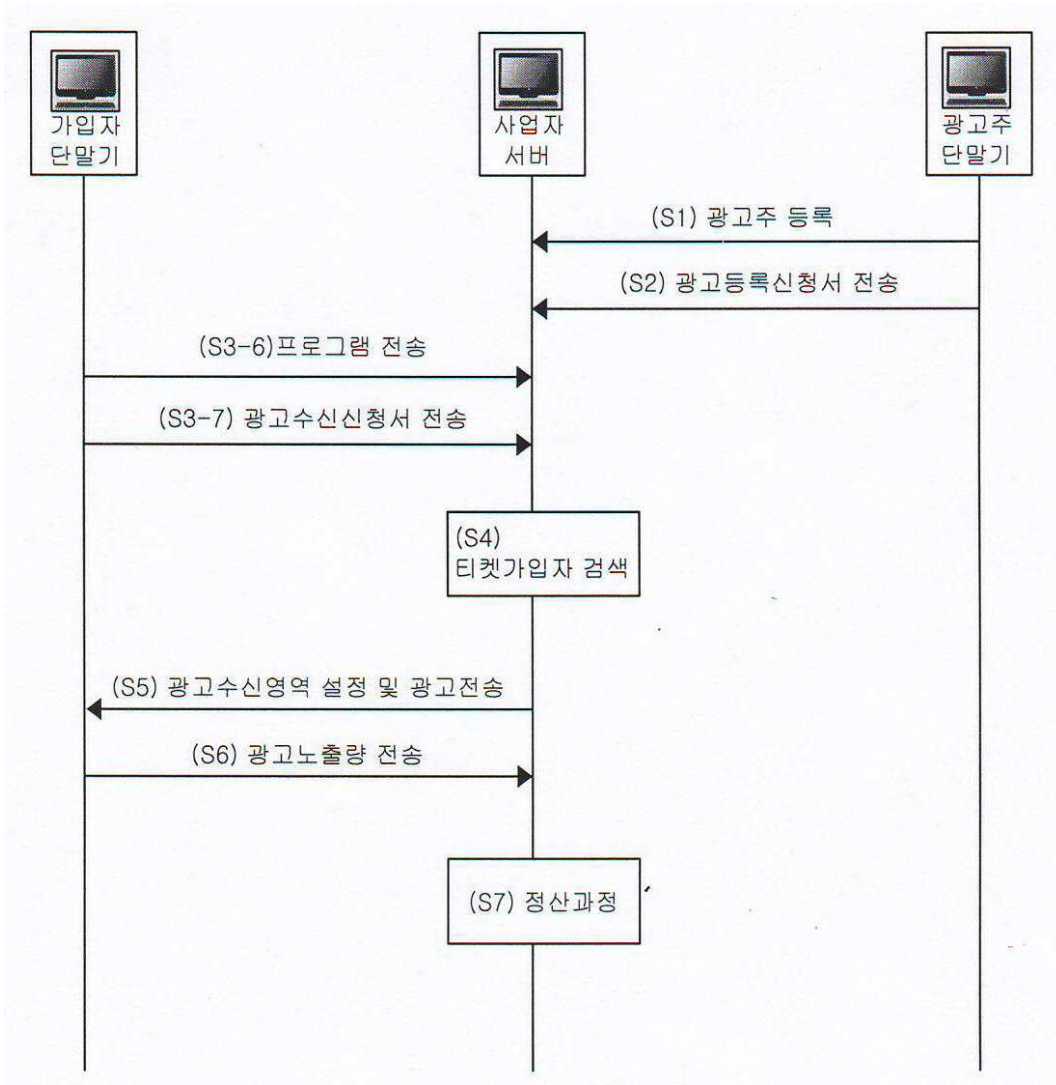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